아름다운 생복한 시간

제2021-89호 2021년 5월 11일(화)





보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197호 구미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고시

3

공 고

0 여수시 공고	제2021-1379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4
o 여수시 공고	제2021-1381호	양돈농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5
o 여수시 공고	제2021-1382호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업자 변경(대표자) 지정 공고	6
0 여수시 공고	제2021-1386호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	14

기 타

회				
람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고시

「연안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 5. 11.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목적

- 육지지역의 기존 호안에 파라펫 설치, 호안도로 증고를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 및 만조 시 월파 방지 및 침수 방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복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명 및 장소

- 사업명 : 구미지구 연안정비사업

-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423-8 일원

3.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 사업규모 : 파라펫 설치 L=180m, 호안도로 증고 L=363m

- **총사업비**: 271백만원

4. 사업기간 : 2021. 1. ~ 2021. 10.

- 5. 사업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061-659-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양식업의	시설	면적	양식장	머쉬기기	수산자원	양 식 업 권	면 자	비고
번호	종류	방법	(ha)	위치	면허기간	조 성 금 (천원)	주 소	성 명	미끄
11824	패류 양식	수하식	10.00	돌산 금봉	2021.6.08. 2031.6.07.	1,000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	하**외 1	10819 재개발
11825	패류 양식	수하식	3.00	돌산 금봉	2021.6.02. 2031.6.01.	300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	이**외 1	10820 재개발
11826	패류 양식	수하식	15.00	화양 안포	2021.6.05. 2031.6.04.	1,500	여수시 돌산읍 금천길 **	한**외 5	10824 재개발
11827	패류 양식	수하식	15.00	화양 안포	2021.6.05. 2031.6.04.	1,500	여수시 화양면 굴개길 ***	김**외 4	10825 재개발
11828	패류 양식	수하식	14.00	돌산 금봉	2021.6.05. 2031.6.04.	1,400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	김**외 6	10826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1. 5. 11.

여 수 시 장

양돈농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양돈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관내 양돈농가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여 수 시 장

- 1. 목적: 양돈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
- 2. 지역: 여수시
- 3. 대상: 양돈농가
- 4. 기간: 2021. 5. 7.(금)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 5. 내용: 양돈농가 방목사육 금지
- 6. 방목 금지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 7.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8. 문의처: 여수시 농업정책과 (☎ 061-659-4442)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11일

여 수 시 장

- 1. 변경지정일 : 2021년 5월 11일
- 2.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 마을명 : 화정면 낭도마을
 -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여산길 66 일원
- 3. 대표자(변경)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용
 - 주 소 : 여수시 화정면 여산4길 **
- 4. 사업개요
 - 어촌체험 프로그램(개매기체험, 낭만어부체험 등)
 - 야영장 운영
 - 민박
 - 어촌밥상 및 특산품 판매장 운영
- 5. 준수사항 : 붙임참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사업자는 「**낭만낭도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시 아래 지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 가. 사업자는 「**낭만낭도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여수시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 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본 지정서는 「도농교류 촉진법」에 의한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위한 것일 뿐, 그 외의 사항은 별도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 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산관리

- 가.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 나.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낭만낭도 어촌체험·휴양마을」시설 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 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 난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마.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도·농 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나.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 상기 사유 이외에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영조건

- 가.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 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시장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시장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나. 사업자는 「낭만낭도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한다.
 - ①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④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호'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시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종료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라. 사업자는 「낭만낭도 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시설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 청소료

- 등> 등)은 낭만낭도 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 마.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낭만낭도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 바.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들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별표4]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 아.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시설이 있을 시는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 자.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 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차. 시장은 「낭만낭도 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시장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 또한, 시장은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하되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u>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u>(제4조 관련)

지설 설치 기준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정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 없는 중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한 시설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기 파산국 위로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보설비를 갖출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라 기살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 이상이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1대 이상 갖출 것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1대 이상 갖출 것	1. 소방 시설 설치	가 . 폐 교 나 . 그 밖의 마을공동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시설	마을공동시설	각 1대 이상 갖출 것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

[별첨 2]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u> 2. 개 열기 권</u>				
위 반 사 항	근 거	행 정	처 분	기 준
위 반 사 양 	법 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 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 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 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별첨 3]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태료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법 제28조	100만원
사업을 운영한 경우	제2항제1호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법 제28조	50만원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2항제1호의2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법 제28조	40만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법 제28조	200만원
않은 경우	제1항제1호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	법 제28조	30만원
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법 제28조	400만원
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제1항제2호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법 제28조제4항	20만원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	법 제28조	30만원
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3항제1호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법 제28조	100만원
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의3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	법 제28조	50만원
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제3항제2호	

비고: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 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 고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1.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옴부즈만 조례를 근거 법령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명기하여 부패방지 권익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정
- O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등에 따른 현장방문시 실비 보상

2. 주요내용

- O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뒤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를 삽입
- O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
 - 제24조(활동 수당 지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등에 따른 현장방문 시 여비 지급 규정 추가
- 3. 입법예고기간 : 2021. 5. 12. ~ 5. 31.(20일간)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시민공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시민공감담당관)
 - 전 화: 061-659-3076, 팩 스: 061-659-5863
 - 이 메 일 : es8254@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찬성여부		0174/110)	7151 *+7 116+	
찬성	반대	의전(자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찬성 반대	한성 반대 의견(사유)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따른 활동 수당 외에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 에 따른 여비를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여수시</u> 시	제1조(목적) <u>조례는 「부패방</u>
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	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	및 제38조에 따라 여수시
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다.	

신・구조문대비표(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②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u>옴부즈만과</u> 타 기관의 옴부	④ <u>항을 ③항으로 옴부즈만과</u>
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활동 수당 지원) (생 략)	제24조(활동 수당 지원)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제1항
	에 따른 활동 수당 외에 <u>민원현</u>
	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